

# 기부금품 관리 및 운영규칙

제정 2016. 09. 23. 규칙 제78호

개정 2020. 03. 13. 규칙 제12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으로 기부하는 기부금품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운용을 통하여 한국만화영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부금품의 범위)** 진흥원의 현금 및 현물 기부금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순수 기부금품
2. 조건부 기부금품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축하금품·찬조금품 등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진흥원에 제공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전 및 현물을 말하며, 세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시행령에 따른다.
2. "순수 기부금품"이란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용도, 지원방법 등의 사전조건 없이 재단에 제공한 기부금품을 말한다.
3. "조건부 기부금품"이란 기부자가 지원대상이나 지원방법, 기부방식, 집행시기 등을 지정한 기부금품을 말한다.
4. "조건부 기부금품 수혜자"란 조건부 기부에서 정한 기부금품이 배분되는 단체와 개인, 혹은 이들의 특정 개별 단위사업 등을 말하며, 진흥원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조건부 기부의 경우 조건부 기부금 수혜자는 재단 또는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 예술인이 된다.
5. "기부자"라 함은 재단에 무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기부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부신청)** 진흥원에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기부금의 성격에 따라 다음 사항을 기재한 기부약정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3.>

1. 기부 금액 또는 기부 재산의 표시
2. 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일 경우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 조건부 기부금일 경우에는 기부 조건 및 기부 잔액 처리방법 등의 기부조건 명기

4. 공개적인 기부금품 모집사업에 의한 기부금품의 경우에는 별도 양식 및 기부신청절차에 따라 기부신청과 기부약정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제5조(기부금품 접수)** 진흥원은 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부금품을 접수하며 관련 법률의 기준에 따른다. 단, 다음과 같은 성격의 기부금품은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진흥원의 미션 및 비전, 고유목적사업에 일치하지 않는 기부
2. 진흥원의 명성과 신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부
3. 진흥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추가비용이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기부
4. 진흥원의 규정을 위배하거나 실정법을 위반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기부

**제5조의2(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원장은 기부금품 채납 여부 결정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금 주무부서 실장
2. 부천시 진흥원 주무부서 팀장
3. 원장이 추천한 사람 2명
4.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② 위원장은 기부금 주무부서 실장으로 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금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진흥원 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20. 03. 13.]

### **제6조(조건부 기부금품에 대한 조정 지원)**

① 진흥원은 조건부 기부금품에 의한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기부효과를 거두기 위해 그 금액과 지급방법, 또는 사업 내용을 기부 채납 이전 또는 기부금품의 지원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조정 지원은 기부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며, 조건부 기부금 수혜자에게 조정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기부자가 제1항에 의한 금액 또는 사업내용의 조정에 대해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조건부 기부금을 채납할 수 있다.

④ 조건부 기부금의 처리는 기부약정 시 기부자가 제시한 기부조건을 우선하여 집행하며, 기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과 기부자가 상호 협의한다.

### **제7조(기부금품 채납결정 및 통지)**

① 진흥원은 기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부품

채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즉각 기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건부 기부금의 경우 조건부 기부금 수혜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관련하여 별도로 정한 사항이 아닌 한 기부금품 채납통지는 기부금품 영수증 발급으로 대체한다. <개정 2020. 03. 13.>

② 진흥원은 기부금품 채납 여부 결정시 조건부 기부금의 조건이 문화예술진흥법 또는 한국만화영상사업의 목적에 합당한지 여부와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기부금품의 채납 여부를 결정한다. 단, 공모에 의한 기부금품 사업에 관해서는 이를 예외로 한다.

③ 기부금품 채납여부를 통지받은 기부자는 약정 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관련된 제반사항”이라 함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안점으로 한다. <개정 2020. 03. 13.>

1. 기부자 및 기부금품의 채납상의 타당성 및 가능성
2. 조건부 기부금에 의한 지원사업의 타당성 여부

⑤ 기부자와 조건부 기부금 수혜자가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채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03. 13.>

⑥ 현물 기부의 경우, 기부가액의 산정은 관련세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준용하여 기부자가 해당 기부 현물의 “별지 제2호 서식”의 장부가액 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0. 03. 13.>

**제8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진흥원장은 기부금품의 채납을 결정하였을 때는 기부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으며, 우수기부자에게 상패 시상 등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제9조(기부금품의 처리)** ① 기부금품을 채납하였을 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한 기부금품 영수증을 발급한다.

② 진흥원에 채납된 기부금품은 기부금품 세입으로 수납한다. 단 조건부 기부금은 별도 계정으로 구분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기부자와의 약정 내용에 따라 관리 운용한다.

③ 조건부 기부금 중 제6조에 의한 조정 결과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와 사업지원 종료 후에 발생한 잔액(관리기간 중 발생한 이자 포함)은 기부자와의 약정에 따라 순수기부금으로 채납 처리할 수 있다. 단, 기부자가 기부약정시 기부금품액 잔액 처리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진흥원은 기부금품을 운영할 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적합한 범위 내에서 모집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의2(기부자 명부 관리)** 원장은 진흥원에 기부금품을 기부한 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명단은 “별지 제 3호 서식”에 따른다.

<조문신설 2020. 3. 13.>

**제10조(기부금품 사용 결과보고)** ① 사업연도 내 발생한 모든 기부금품 관리 및 운용내역은 진흥원 재무회계 규정에 따라 결산보고에 포함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연도 내 기부금품 모집 및 활용 실적은 다음 사업연도 3월31일까지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업연도 내 발생한 모든 기부금품의 사용내역은 다음 사업연도 6월30일까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确定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진행 된 기부금품의 처리는 「문화예술진흥법」의 기부금품 처리 방법에 따른다. 단, 2016년 2월 1일 이후에 모집된 기부금은 본 규칙에 적용한다.

## 부 칙 (2020. 3. 13. 제1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후 3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